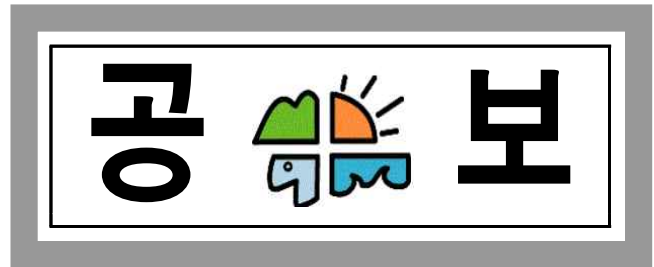


속 초 시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람	기 관 의 장



제1489호 2023년 9월 8일(금)

고 시

- 속초 도시관리계획(동명3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에 따른 지형도면 승인 고시 · 2

공 고

- 국민주택(동명연립) 융자금 채납액 납부 안내문 및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 5

입법예고

- 속초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6
- 속초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10

속초 도시관리계획(동명3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에 따른 지형도면 승인 고시

1. 속초시 고시 제2023-123(2023. 9. 5.)호로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고시된 도시관리계획(동명3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승인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속초시청 미래전략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3년 9월 6일

속 초 시 장

1. 속초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지형도면 승인 조서

가.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지형도면 승인 조서

구 분	도면표시 번 호	구 역 명	위 치	면 적 (㎡)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변경	40	동명3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강원도 속초시 동명동 361-1번지 일원	7,537	-	7,537	

■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지형도면 승인 사유서

구 분	도면표시 번 호	위 치	면 적(㎡)	결 정 사 유
변경	40	강원도 속초시 동명동 361-1번지 일원	7,537	□ 지적좌표계 변경으로 인한 지적변경 사항으로 사업구역 선을 변경하고자 함.

나.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지형도면 승인 조서(변경없음)

1) 용도지역 지형도면 승인 조서

구 분	면 적 (㎡)			구성비(%)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계	7,537	-	7,537	100.0	
일반상업지역	7,537	-	7,537	100.0	

2)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지형도면 승인 조서

■ 교통시설(도로) 총괄표

유 별	합 계			1 류			2 류			3 류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합계	1	340	8,500	-	-	-	-	-	-	1	340	8,500
대로	1	340	8,500	-	-	-	-	-	-	1	340	8,500

■ 교통시설(도로) 변경 조서

구분	규 모				기 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대로	3	2	25 ~ 29.5	주간선 도로	340	동명 450-1도	동명 259-3도	일반 도로		1974. 8. 14 (건고 제272호)	

■ 공간시설(교통광장) 변경 조서

구 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 류	위 치	면 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 정	7	광장	교통광장	동명동 81-1도 일원	3,248.0	-	3,248.0	1986.6.3. (건고제238호)

3)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구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지형도면 승인 조서

구 분	도면표시 번 호	가구 번호	획지 번호	획 지				비 고
				위 치	면적(㎡)			
					기정	변경	변경후	
1	40	BL1	A	강원도 속초시 동명동 361-1번지 일원	7,258	-	7,258	공동주택
			B	강원도 속초시 동명동 81-1번지 일원	279	-	279	공공시설

※ 공공시설은 도시계획도로 및 교통광장으로 기부채납 예정임.

4)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지형도면 승인 조서

도면표시 번 호	위치 (획지번호)	구 분	결 정 내 용
40	A	용도	허용 ◦ 「주택법」에 의한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불허 ◦ 허용용도 외의 용도
		건 폐 율	◦ 80% 이하
		용 적 률	◦ 900% 이하
		높 이	◦ 43층 이하
		배 치	-
		형 태	-
		색 채	-
		건 축 선	◦ 건축한계선 6M

5)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지형도면 승인 조서(변경없음)

도면번호	위치	계 획 내 용	비 고
40	BL1	◦ 단지내 조정 - 「건축법」 및 「속초시 건축조례」 등 관련법령에 의한 설치기준 이상 조성	
		◦ 차량진출입허용구간 - 교통영향을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허용구간을 지정하여 차량 진출입구 설치 - 차량진출입허용구간으로 결정된 부분 외에는 차량진출입 불허	
		◦ 주차장 설치기준 - 「주차장법」 및 「속초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등 관계법령에 의한 설치기준 이상의 주차장 확보	

2. 속초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지형도면 승인 도면 : 실음생략

국민주택(동명연립) 용자금 체납액 납부 안내문 및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주택법」 제2조제5호에 따라 설립된 국민주택에 대하여 용자금 고지서와 안내문을 송부하였으나, 현재까지 체납하고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3. 09. 05.

속 초 시 장

1. 공고기간 : 2023. 09. 07. ~ 2023. 09. 21. (14일간)
2. 공고장소 : 속초시 홈페이지, 게시판,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3. 공시송달 내용

성 명	발송주소	발송일자	반송일자	반송사유	물건지 주소
육미○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방림면 운지로 128	2023.07.03.	2023.07.12.	폐문부재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우령길 8, 가동 202호
육미○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방림면 운지로 128	2023.08.02.	2023.08.11.	폐문부재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우령길 8, 가동 202호
육미○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방림면 운지로 128	2023.08.17.	2023.08.30.	폐문부재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우령길 8, 가동 202호

4. 유의 사항

공고 대상자는 기한 내 속초시청 건축과 건축정책팀에 문의하여 고지서 발급 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압류의 요건 등)에 따라 귀하의 재산이 압류될 수 있사오니, 불이익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5. 문의처 : 속초시청 건축과 건축정책팀(☎033-639-1513)

속초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속초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속초시 법무행정 사무처리 규칙」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9월 8일

속 초 시 장

1. 자치법규명 : 속초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2. 개정이유

고물가·고금리 등 장기화되는 경제위기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사업장의 임대료와 시설개선비를 지원하여 경영안정과 성장을 지원하고자 하며 이에 대한 지원근거를 조례에 명시하고 현행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소상공인 지원 사업을 추가하고 구체적으로 명시

- 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 사업 중 ‘임대료 지원 사업’을 추가함.
(안 제6조제5호)
- 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 사업 중 ‘옥외 간판, 내·외부 시설 개선 등 시설비 지원 사업’을 추가함(안 제6조제6호)

4. 자치법규안 : 붙임

5. 의견제출

가.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0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속초시장(참조 : 지역경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대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법인·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

나. 의견제출 장소 및 문의처

- 주 소 : 우)24826 강원도 속초시 중앙로 183, 속초시청 지역경제과
- 연락처 : 전화 033-639-2352, 팩스 033-639-2465, 전자문서 ireneny@korea.kr

다. 의견제출 방법 : 서면, 팩스, 전화, 전자문서, 직접방문 등

6. 기 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속초시청 지역경제과 경제정책팀(☎033-639-235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초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속초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5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재해 피해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 사업
6. 소상공인의 옥외 간판, 내·외부 시설 개선 등 시설비 지원 사업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6조(소상공인의 경영안정 지원) 시장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 4. (생략) <u><신설></u> <u><신설></u>	제6조(소상공인의 경영안정 지원) ----- ----- -----. 1. ~ 4. (현행과 같음) <u>5. 재해 피해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 사업</u> <u>6. 소상공인의 옥외 간판, 내·외부 시설 개선 등 시설비 지원 사업</u>
5. (생략)	7. (현행 제5호와 같음)

속초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속초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속초시 법무행정 사무처리 규칙」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9월 8일

속 초 시 장

1. 자치법규명 : 속초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2. 제정이유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의2와 제4조의3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산업재해 예방활동 책무가 신설 규정되어 관내에서 발생하는 각종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사업장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안 제1조 ~ 제2조)

나. 조례의 적용 범위(안 제3조)

다.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시장의 책무(안 제4조)

라. 사업주의 협조 규정(안 제6조)

마. 산업재해 예방대책 수립 및 지원 사업(안 제8조 ~ 제9조)

바. 안전보건지킴이 운영 규정(안 제10조)

사. 노동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 및 지원 규정(안 제11조)

4. 자치법규안 : 붙임

5. 의견제출

가.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0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속초시장(참조 : 지역경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대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법인·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

나. 의견제출 장소 및 문의처

- 주 소 : 우)24826 강원도 속초시 중앙로 183, 속초시청 지역경제과
- 연락처 : 전화 033-639-2801, 팩스 033-639-2465, 전자문서 yn961025@korea.kr

다. 의견제출 방법 : 서면, 팩스, 전화, 전자문서, 직접방문 등

6. 기 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속초시청 지역경제과 경제정책팀(☎033-639-2801)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초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속초시에서 발생하는 각종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근로자 등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하고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업재해”란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2. “노동안전보건”이란 안전하고 쾌적한 노동환경을 통해 산업재해의 발생으로부터 노동자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보호하고, 사업주의 잠재적 재산상 손실이 발생하지 않게 되는 상태를 말한다.
3.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4. “사업주”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5. “안전보건지킴이”란 속초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 사업장에서 산업재해 위험 요소의 발굴·조사·개선·지도·건의 등을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시에 소재한 모든 사업에 적용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 내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역 내에서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자체 계획의 수립, 교육, 홍보 및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장 지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지역 내 산업재해 예방 및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사업주의 협조) ①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산업안전보건법 제77조에

다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사람과 제78조에 따른 물건의 수거·배달 등을 중개하는 사람을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함으로써 근로자(산업안전보건법 제77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제78조에 따른 물건의 수거·배달 등을 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의 안전 및 건강을 유지·증진시키고 시의 산업재해 예방대책을 따라야 한다.

1. 산업안전보건법령이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
2. 근로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줄일 수 있는 쾌적한 작업환경의 조성 및 근로조건 개선
3. 해당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를 근로자에게 제공
4. 안전보건지킴이의 사업장 출입·지도에 대한 협력
5. 그 밖에 시장이 추진하는 산업재해 예방대책에 대한 협력

제7조(협력체계 구성 등) ① 시장은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을 위하여 고용노동부 강원지역 소속기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강원지역본부, 노동조합 및 노동단체, 사업주단체, 연구기관, 강원특별자치도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협력체계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산업재해 예방대책 수립) ① 시장은 산업재해의 예방 및 감소를 위해 지역 내 산업재해 실태조사 및 산업재해 통계 현황 등을 기초로 시 산업재해 예방대책(이하 “예방대책”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예방대책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예방대책의 목표 및 기본방향
2. 산업재해 발생현황 및 지역·업종·고용형태별 실태 자료수집 및 분석
3.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역·업종·고용형태별 대책
4. 사업주 및 근로자,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에 대한 노동안전보건 교육 및 홍보
5.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산업재해 예방 및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 사업
6. 산업재해 예방활동 보조·지원 사업에 필요한 예산
7. 고용노동부 등 관련 기관과의 협업체계 구성 방안
8. 그 밖에 시장이 예방대책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산업재해 예방 지원 사업) 시장은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장 지도

2. 산업재해 예방과 근로자 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정책개발 · 연구
3.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안전보건지킴이 운영
4. 노동안전보건 관련 상담 및 위반행위 신고 지원
5.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주 및 근로자 교육
6. 산업재해 예방 모범사례 발굴 및 홍보
7. 산업재해 근로자의 치료와 재활 지원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력
8. 그 밖에 시장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안전보건지킴이 운영) ① 시장은 관내 사업장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보건지킴이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안전보건지킴이로 위촉할 수 있다.

1. 산업안전보건지도사, 산업안전기사 등 산업안전보건 관련 자격증 소지자
2. 기업체, 산업안전보건 관련 단체 · 기관 등에서 안전보건 담당자로 3년 이상 활동한 사람
3. 고용노동부 장관이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위촉한 사람

③ 안전보건지킴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관내 사업장 지도
2. 산업재해 관련 법규 위반행위의 신고
3. 산업재해 예방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사항의 건의
4.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

④ 시장은 안전보건지킴이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노동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 ① 시장은 산업재해 예방대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한 기업을 속초시 노동안전보건 우수기업으로 인증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속초시 노동안전보건 우수기업 포상
2. 그 밖에 시장이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